

안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1481 |
|----------|------|

발의년월일 : 2006. 9. 4.
발 의 자 : 강기태 의원
외 5인

□ 제 안 이 유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의원의 윤리 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 안산시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하여 의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바람직한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함.

□ 주 요 골 자

- 윤리강령을 준수할 것을 정함(안 제2조)
-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공정할 것을 정함(안 제4조)
-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알선하는 등의 직권남용 금지 세항을 세부적으로 정함(안 제5조)
- 의원직과 관련된 기밀의 누설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 기부행위 등의 금지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을 정함(별표)

□ 제정조례안 :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안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함으로써 의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바람직한 의회상 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윤리강령 준수) 의원은 별표의 안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품위유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청렴의무)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잃은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직권남용 금지) ①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②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의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제6조(직무관련 금품등 취득금지) 의원은 조례안 기타 의안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공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기밀의 누설금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된 기밀(사안의 성질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비밀을 지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대한 사항을 말한다)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사례금) 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관계 규정 이외의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9조(겸직금지)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3조가 규정하는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회피의무)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재산신고) 의원은 공직자 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기부행위의 금지등) ①의원은 경조사 및 선거구 행사 등에 의례적인 범위를 넘는 경조금·찬조금 또는 물품을 보내어서는 아니된다.

②의원은 연말연시와 명절 등에 의례적인 범위를 넘는 선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회의출석) ①의원은 청가서,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해외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②의원은 각종 선거구활동을 이유로 의회의 각종 회의에 불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징계)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사실이 의회의 윤리심사 결과 확인된 때에는 징계 등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 표 】

안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우리 안산시의회 의원은 시민의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시민의 신뢰를 받으며 나아가 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여 의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봉사할 것은 물론, 이 시대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의원상 정립과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 안산시의회 의원이 준수할 윤리강령을 정한다.

1. 우리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여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시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하는 참신하고 신뢰받는 의원이 된다.
2. 우리는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오직 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공익 우선 정신으로 성실한 직무를 수행하며, 사익을 절대 추구하지 아니한다.
3. 우리는 봉사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우리는 안산시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간에 의정활동상 공정한 여건과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함으로써 건전한 의회풍토를 정착시킨다.
5. 우리는 의정활동과 관련된 우리의 모든 공사행동에 관하여 언제든지 시민에게 분명한 책임을 지며 안산시의회 위상을 정립하는데 노력한다.
6. 우리는 의정활동에 있어서 전문성을 부단히 함양하고 의원 상호간의 예의와 인격을 존중하며 충분한 토론을 통해 양보와 합의를 도출하는 선진 의회상 구현에 앞장선다.